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'12년 9월 18일(화) 16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: 투자정책과 변영만 과장(2110-5360), 이유진 사무관(2110-5353) 위순이 사무관(2110-5354) 투자유치과 전윤종 과장(2110-5361), 박성우 사무관(2110-5363)	

1조원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로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

-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, 외국인투자지역 8건 신규 지정 등 -

□ 지식경제부는 9.18(화) 14:00,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'외국인투자지역'을 신규 지정하고, 글로벌기업의 R&D센터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

○ 금번 회의는 지난 8.16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최됨

□ 먼저, 금번 회의에서는 일본, 미국, EU 등 핵심 투자국 주요 기업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8건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로 지정

○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, 국세(법인세) 7년 감면(5년 100%, 2년 50%),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) 감면이 지원되며,

○ 금번 8건의 신규지정을 통해 향후 약 2조원의 투자효과(FDI 9,800억원 포함)와 5.5만명(직접고용 4천명 포함) 가량의 직·간접적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됨

< 외국인투자지역 신규지정 대상 및 지역 >

유형	해당 기업
수출형	닛소남해아그로(전남), 현대쉘베이스오일(충남), 굴드펌프(충북)
합작(JV)형	울산아로마틱스(울산),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(충남)
고도기술형	동우화인켐(전북), 아드반테스트코리아(충남)
대규모 고용창출형	에이에스이(경기)

○ 특히, 금번 신규지정 분야는 수출형·합작형(JV)·고도기술형·대규모 고용창출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, 향후 선진기술 이전·수출 및 수입대체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

□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R&D 센터 유치 확대를 위해 앞으로 동 분야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가 현행 외국인투자 규모의 최대 30%에서 최대 40%로 확대*됨

○ 또한, 대규모 고용창출사업,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,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산정기준이 신설되어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촉진될 전망임

* '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' 개정

□ 이와 함께, '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'을 개정하여 현재 '외국인투자지역' 밖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기존 자본금의 30%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,

○ 외국인투자지역내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,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

□ 한편, 지식경제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에 외국기업 선호지역에 '부품소재전용공단'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,

○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상하이(10월), 광저우(11월), 칭따오(12월) 등 하반기에 중국 전역에 대한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임

□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석 차관은 "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,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"이라고 평가하면서,

○ "앞으로도 '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(8.16)' 후속조치 관련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"임을 강조함

참고1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요

□ **회의 개요**

○ 일시 및 장소 : '12.9.18(화) 14:00~15:30, 6층 다산실(623호)

○ 참석자 : 제2차관(주재), 관계 부처 국장, 시·도 부단체장 또는 담당 국장, 경제자유구역청장, KOTRA IK 커미셔너 등

□ **상정 안건 :** 보고안건 1건, 심의안건 14건

○ (1호)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방안(8.16, 비경) 후속 조치계획 보고

○ (2호)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(안) 임대보증금 납입방법 개선 등

○ (3호)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(안) : R&D센터 현금지원 한도 확대 등

○ (4호~14호)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(8), 변경(1), 해제(2) : 11건

* 신규지정 : 동우화인켐(전북), 아로마틱스(울산), 굴드펌프(충북), ASE(경기) 등

○ (15호) 옥포국제학교 지원(안) : 옥포국제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국비 지원

참고2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(안)

안건명 (지역)	지정 등 사유
동우화인켐(주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전북)	고순도 알루미나 제조로 소재산업 첨단기술 도입,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
울산 아로마틱스(주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울산)	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파라자일렌 및 벤젠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여
굴드펌프(주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충북)	산업용펌프 제조분야 첨단기술 이전 및 수출효과(생산제품 80%이상)와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
에이에스이(주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경기)	반도체 패키징·테스팅분야 기술이전,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파급효과 기대
닛소남해아그로(주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전남)	작물보호제 원제 생산 기술이전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
현대쉘베이스오일(주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충남)	윤활기유 제조분야 첨단기술 이전 및 수출효과(생산제품의 85% 수출) 등 국가경제 파급효과
아드반테스트코리아(주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충남)	반도체 테스트장비 제조 관련 분야 기술이전 효과 기대
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(유) 외투지역 신규 지정 (충남)	OLED용 유리기판 생산공법(新 Fusion 공법)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효과 기대

참고3 **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(안)**

□ 개정목적

○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,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

□ 개정안 주요내용

○ 업무의 효율성 제고

- "국가가 분담금을 지자체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"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지대금 지급 일원화

 * 현행 : 국가와 지자체가 부지매입 분담금을 각각 부지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에게 불편과 행정 비효율 초래

-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산단공내 "외국인투자지원센터"의 운영기간 명시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근거 마련

○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수렴

-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존 자본금의 30%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, 외국인투자지역 밖에 있는 기업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전 애로 해소

-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분납(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4회 분납), 보증금을 은행질권으로 대체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시 원금과 함께 이자를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함